〔일련번호 : 90〕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비 미계상 및 배출자 신고 미이행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◘◘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◘◘과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및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(발주자의 의무)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, 분리배출, 보관,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하며,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.

같은 법 제17조(배출자의 신고 등)에 의거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◇◇과는 ‘2024~2025년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’와 관련하여, 건축물, 계단, 목재, 난간 철거 등 다수의 철거공종을 설계내역에 반영하고도 건설폐기물 처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았고, 또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였음에도, 해당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양천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계획(배출자 신고)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[표] 건설폐기물 처리 소홀 내역

공사명	공사기간	계 약 자	준공금액 (천원)	부적정 내역
2024년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(연간단가)	`24.02.07. ~ `24.12.31.	(주)○○○○	134,500 (준공액)	건설폐기물 처리비 미계상 및 배출자 신고 미이행 - 건축물, 계단, 난간 등 철거비(12,657천원)
2025년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(연간단가)	`25.02.21. ~ `25.12.31.	(주)○○건설	188,026	건설폐기물 처리비 미계상 및 배출자 신고 미이행 - 시설물, 목재 등 철거 (30,101천원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◇◇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◇◇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건설폐기물 처리비 계상 및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**(주의)**